

투자설명서 정정 전·후 대비표

1. 펀드명 : 현대인베스트 코스닥 벤처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2. 변경 적용일 : 2026 년 5 월 27 일

3. 정정사항 :

- ① 최근 결산기 재무정보 확정에 따른 기재정정
- ② 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 기재정정
- ③ 채권평가회사 관련 내용 기재정정
- ④ 조세제한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표지			
4. 작성기준일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8월 18일	2026년 4월 2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9월 11일	2026년 5월 27일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8월 18일	2026년 4월 27일
투자비용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4일	2026년 4월 4일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5일	2026년 4월 27일
주요 투자위험 - 세제혜택 미적용위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까지 10%의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 가입한 투자자가 3년 이상 투자 시, 1인당 연 2천만원까지 1과세연도에 한해 10%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효력발생일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9월 11일	2026년 5월 27일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9월 11일	2026년 5월 27일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p>---(이전 생략)---</p> <p>벤처기업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1.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하 생략)---</p> <p>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p> <p>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u>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u>에 따른 투자</p> <p>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u>아니</u>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u>아니</u>한 기업으로서 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u>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u>에 따른 중견기업에 <u>가목 제1호</u> 및 <u>제2호</u>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p> <p>2. 상기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 및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이전 현행과 같음)---</p> <p>벤처기업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p> <p>1.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하 현행과 같음)---</p> <p>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p> <p>1) 벤처투자 <u>촉진</u>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u>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합니다.</u></p> <p>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u>않</u>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u>않</u>은 기업으로서 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u>가목 1)</u> 및 <u>2)</u>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p> <p>2. 상기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u>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5%로 본다</u>)을 매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50% 및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정정	<p>1) 투자전략</p> <p>가) 주식운용전략</p> <p>---(이하 중략)---</p> <p>(변경전1)</p>	<p>1) 투자전략</p> <p>가) 주식운용전략</p> <p>---(이하 현행과 같음)---</p> <p>(변경후1)</p>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 세제혜택 미적용위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따른 기재정정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 가입한 투자자가 3년 이상 투자 시, 1인당 연 2천만원까지 1과세연도에 한해 10%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현행과 같음)---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최근 일자 업데이트	- 수익률 변동성 : <u>51.22%</u>	- 수익률 변동성 : <u>52.36%</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4일	2026년 4월 4일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따른 기재정정	1)-3) (생략) ---(이전 중략)--- (변경전2) ---(이하 생략)---	1)-3) (현행과 같음) ---(이전 중략)--- (변경후2) ---(이하 현행과 같음)---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4일	2026년 4월 4일
나. 재무상태표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4일	2026년 4월 4일
다. 손익계산서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4일	2026년 4월 4일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4일	2026년 4월 4일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5일	2026년 4월 27일
나. 연도별 수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5일	2026년 4월 27일

익률 추이(세전 기준)	이트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4일	2026년 4월 4일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일자 업데이트	2025년 4월 5일	2026년 4월 27일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채권평가회사 추가 및 주소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KIS자산평가(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이전 중략)--- (신설)	KIS자산평가(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이전 현행과 같음)--- 이지자산평가(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www.egap.co.kr

(변경전1)

주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3호제가목1)에 따른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주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3호제가목 및 나목에 따른 투자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변경후1)

주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투자
주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투자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투자. 다만, 타인

	<p>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합니다.</p> <p>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p> <p>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p>
--	---

(변경전2)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계약기간	3년 이상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
소득공제방법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
감면세액추징	<p>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변경후2)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계약기간	3년 이상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거주자 1인당 소득공제한도는 연 2천만원)

<p>소득공제방법</p>	<p>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신청서에 이 투자신탁을 가입한 판매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그 외의 투자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함</p>
<p>감면세액추징</p>	<p>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투자자가 각 수익증권 투자일(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수익증권 투자로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추징받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자 본인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4.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u>다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u> 5. <u>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u>